2024년 세무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개시일(보험료 송금일자)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갱신 가입자는, 2024년 7월 5일(금)까지 가입 신청 및 보험료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같이 록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cktonpi.com)를 사용하여 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이 진행됩니다. 안내문 6페이지의 가입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손해배상책임보험명 :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 담보내용 : 세무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인해 고객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ex. 가산세)

□ 계약기간 : 1년 (2024.06.30. 00:01 ~ 2025.06.30. 00:01)

□ 갱신마감일 : 2024. 7. 5 (금)

□ 소급담보일자 : 기존가입자 - 최초가입일자 (계속 갱신자에 한함)

신규가입자 - 보험개시일 (보험료 송금일자)

□ 배상청구기준증권 : 유효한 보험가입기간 중에 원인행위와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됨

□ 보험요율 : 기준보험료 및 자기부담금(개인,법인 구분)

무사고 할인.사고할증률 (개인.법인 동일)

가. 무사고 기간에 따른 계속 할인 적용 : 20년 이상 할인 구간 신설

구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신규 가입
할인율	25% 할인	20% 할인	15% 할인	14% 할인	13% 할인	10% 할인	7% 할인	5% 할인	0%

나. 개인별 직전 3개년 손해율에 따른 할증율 적용

손해율	0% ~ 100% 이하	100%초과~ 200%이하	200%초과~ 500%이하	5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할중율	0%	50% 할중	100% 할중	200% 할중	250% 할중	300% 할중

※ 손해액은 추산보험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손해율 범위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추산보험금 은 사고가 접수되어 조사 진행 중인 경우 예상(추산)되는 보험금이며 단, 사고종결 후 최종 지급 된 보험금에 따른 손해율의 결과로 갱신시점 할증율과 다른 범위로 할증율이 결정된 경우 보험료 를 추징 또는 환급 처리합니다.

<2024년도 주요 보험조건 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한도 구간 확대 신설

개인가입 : 2억5천만원 / 법인가입 : 1억5천만원 구간 신설(상세 사항은 4페이지 다, 라 참조)

2)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적용

<u>동일회사의</u>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발생한 <u>동일한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사고들은</u> 그 과실이 연속된 귀속연도에 계속 반복되어 발생하였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u>하나의 사고로</u> 간주되어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3)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적용 / 미적용 선택시 보험료 할증

공동보험제도란 1회의 배상청구(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 후 결정된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예상지급보험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지급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하기의 비율만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상지급보험금에는 '방어비용 및 조사비가 포함'됩니다.)

예상지급보험금 규모	공동보험비율
1천만원 미만	15.5%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5.5%
3천만원 이상~	30.5%

- ※ 공동보험제도 "미적용"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u>선택하신 기준보험료에</u>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사고발생 시 아래와 같이 보상됩니다.
 - 예1)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보상한도 3천만원, 자기부담금 300만원의 경우
 - ① 공동보험 적용 시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공동부담비율 25.5% 적용) (20,000,000 3,000,000) x 74.5% = 12,665,000원 지급
 - ② 공동보험 미적용 시 (자기부담금만 차감) 20,000,000 - 3,000,000 = 17,000,000원 지급
 - 예2) 손해배상금이 3500만원, 보상한도 5천만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의 경우
 - ① 공동보험 적용 시 (3천만원 이상 : 공동부담비율 30.5% 적용) (35,000,000 2,000,000) x 69.5% = 22,935,000원 지급
 - ② 공동보험 미적용 시 (자기부담금만 차감) 35,000,000 - 2,000,000 = 33,000,000원 지급
- ※ <u>소액사고 공동보험 미적용</u>: 하나의 사고에 대해 예상지급보험금(산출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이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고의 경우 공동보험제도 미적용
- ※ 직전 3개년간 사고 발생건수가 3건 이상인 개인세무사/세무법인은 공동보험제도 미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동보험제도가 적용됩니다.
- 4) 사고자 보험료 할증 적용

갱신 직전 3개년도 증권의 보험기간 동안 수령한 누적보험금(추산보험금 포함)에 따른 개인별 손해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개별 할증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갱신시에는 21,22, 23년도 보험기간의 지급 및 추산보험금 합계액에 따른 손해율을 산정하여 할증됩니다. 단, 추산보험금이 반영되어 갱신 할증된 경우 사고종결 후 최종 확정된 지급보험금에 따른 손해율 및 할증율이 갱신시점 할증율과 다른 범위로 결정된 때에는 보험료를 추징 또는 환급합니다.

- 5)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한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적용 상기 2)번의 사고자 보험료 할증율은 가입경력과 무관하게 최근 3개년 기준 손해율 규모에 따라 할증율을 적용하였으나,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고발생 시 아래와 같이"장기가입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 <u>최근 3개년(2021/22/23) 손해율이 100% 이하</u> 대상자 중 가입경력이 10년 이상
 - → 기존 개인/법인 할인율 유지

예시) 2003년 7월 이후 무사고 계속 가입자가 2023년도 증권 사고발생 (무사고 갱신일 경우 무사고기간 21년으로 2024년도 25%할인 적용)

3개년 누적손해율	기존 할증적용율	장기가입우대 적용
95%	0%	25%할인 (계속가입 할인율 유지)

◈ 최근 3개년(2021/22/23) 손해율이 100% 초과하지만, 가입경력이 10년 이상,

10년 누적손해율이 50%이하 대상자 → 해당 할증율 50% 경감

예시) 2007년 7월 이후 계속 가입자가 2023년도 증권 사고발생

3개년 누적손해율	10개년 누적손해율	기존 할증적용율	장기가입우대 적용
508%	40%	200%	100% 할증
30070	4070	20070	(할 증 적용율의 50% 경감)

- * 직전 3개년간 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이며 손해율 500% 이상인 경우에는 본 단체계약 가입이 제한됩니다.
- 6) 법인의 사고자 보험료 할증 적용 (법인 소속 세무사 개별 할증)

법인의 경우 소속 세무사 개별 할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소속 세무사 사고 시 법인 전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사고 해당 세무사에 대한 손해율만 별도 산정되며 개별 할증 적용됩니다.

(기타 조건은 동일하며 갱신 직전 3개년 개인 손해율만 산정하여 할증)

예) 법인 소속 세무사 5명 중 1명이 아래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년도	납입한 보험료(원)	지급 및 추산보험금(원)		
2021년	470,720	_		
2022년	451,600	_		
2023년	473,840	14,500,000		
합계	1,396,160	14,500,000		
개별손해율	1039%	(14,500,000 ÷ 1,396,160)		
할 증 율	250% 할증 대상 (1000% 초과 2000% 이하)			

▶ 최근 3년간 무사고 법인이 갱신 가입 (보상한도 5천만원 / 자기부담금 3백만원) (세무사 인원수에 따른 할인율 5%, 3년간 무사고에 따른 계속 할인율 10%)

무사고 세무사(4명): 528,800 x 4 x 95% x 90% = 1,808,490 (1인당 452,120)

사고 세무사(1명) : (528,800 + (528,800 x 250%)) x 95% = 1,758,260

법인의 총 납입보험료 : 3,566,750원 (1,808,490 + 1,758,260)

다. 개인 세무사 보험료

◆ 보상한도액 : 2억5천만원 구간 신설

1청구당 또는 연간 총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으로, 3천만원부터 최고 2억5천만원 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 사고(손해배상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인 세무사님이 1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최저 1백만원 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간 보험료 안내

연간	총보상한도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2억5천만원
	1백만원	758,700	836,200	1,535,100	2,110,900	2,664,400
자	2백만원	516,100	609,600	1,096,500	1,475,800	1,831,000
기 (1 ᆸ 청	3백만원	438,900	528,800	989,000	1,280,200	1,560,700
부구당) 담()	5백만원	354,200	418,700	783,800	1,032,800	1,281,300
급 :	7백만원	297,600	351,400	658,100	885,400	1,098,500
	1천만원	227,600	269,500	503,500	738,600	916,300

<납입보험료 계산 예시>

	7L0] ₹ 7J	보상한도 3천만원 / 자기부담금 2백만원 선택,
	가입조건	3년 무사고로 갱신하는 경우
게 인	보험료계산	516,100원 x 90% (3년 무사고갱신 10%할인)
" "	เไดโบ≑โ⊐	464,490원 * 원단위 절사하여 십원 단위까지 계산
	납입보험료	※공동보험 미적용 선택시 : 696,730원 (464,490 x 150%)

라. 세무법인 보험료

◆ 보상한도액 : <u>1억 5천만원 구간 신설</u>

1청구당 보상한도액에 소속 세무사 수를 곱한 금액이 세무법인 연간 총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단, 총 보상한도액은 10억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자기부담금 : 사고(손해배상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인 세무법인이 1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으로 최저 2백만원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간 보험료 안내 (세무사 1인당 보험료)

보상힌	·도액(1청구당)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자	2백만원	516,100	609,600	1,096,500	1,236,400
^1 기 î	3백만원	438,900	528,800	989,000	1,115,200
부 ^청 구	5백만원	354,200	418,700	783,800	883,800
담 당	7백만원	297,600	351,400	658,100	742,100
금	1천만원	227,600	269,500	503,500	567,700

상기 보험료는 소속 세무사 1인에 해당하는 연간보험료이며, 세무사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됩니다.

소속 세무사 인원수	3~6명	7~10명	11명 이상
할 인 율	5%	10%	15%

◆ 법인 총 납입보험료 : 선택보험료(1인당) × 인원수 × 인원수할인율 × 무사고할인/할증율 (단, 사고가 있는 세무사의 경우 개별할증율 별도 적용)

<납입보험료 계산 예시>

	가입 조건	소속 세무사 인원수 : 5명 보상한도액 : 5천만원 - 1청구당 (연간 총한도 2억5천만원) 자기부담금 : 3백만원 - 1청구당 사고할인할증여부 : 1년 무사고 갱신 세무사 1인당 보험료 : 528,800 원			
법 인	보험료 계산	528,800원 x 5명 x 95% x 95% - 세무사인원수 3~6명에 해당 : 할인 5% 적용 - 1년 무사고 갱신 : 할인 5% 적용 * 단, 사고가 있는 세무사는 개별 할증률 적용			
	총 납입보험료	2,386,210원 * 원단위 절사하여 십원 단위까지 적용			
		*공동보험 미적용 선택시 : 3,579,310원 (2,386,210 x 150%)			

- *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근거 메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점 소속 지방세무사회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 8)
- ※ 법인 소속 세무사는 개인 세무사로 개별 가입이 불가합니다.

마. 배상청구기준증권

본 보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u>배상청구기준증권의 특성</u> 때문에 만기일까지 <u>갱신이 되지 않으면 유효한 보험기간이 존재하지 않아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u>. 다만 자동보고연장기간 60일 적용에 따라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 중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u>보험종료일(2024년6월30일)로부터 60일까지만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u>. 따라서보험계약의 갱신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 주간 보험회사 변경 (DB손해보험 선정)

2024년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주간 보험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DB손해보험(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6월 30일 이전 현대해상 보험기간 중에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었거나, 인지했거나 손해배상 청구된 사건은 현대해상으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록톤으로 연락하여 사고접수 바랍니다.

사. 법인/개인 피보험자 전환 및 ERP(보고연장담보기간) 안내

법인에서 개인 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피보험자 전환 시 이전의 소급담보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 개인사무소의 운영폐지 등 보험가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RP(보고연장담보기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에 대한 피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별도 첨부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자. 상품설명확인서 첨부
 - 이 보험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상품설명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가입 절차 안내 : 2024년 7월 5일(금)까지 갱신 요망
 - → 록톤코리아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갱신 및 신규 가입 진행
 - → [홈페이지] https://www.locktonpi.com
 - ①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신규 가입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진행)
 - ② '계약 갱신' 클릭 (가입정보 확인, 보험조건 선택, 최종 보험료 확인)
 - * 신규 가입자는 '가입 신청' 클릭 후 진행
 - ③ '신청서 최종제출'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전에는 보험조건 변경 가능) (가입증명서 출력은 7월 10일(예정)부터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보험료 납부 2일 이후 가능)
 - → 법인 신규회원은 록톤코리아에서 아이디 등을 부여하오니 먼저 록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u>신규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 세무사는 세무사등록증을 먼저 록톤으로 보내 세무사회원 확인 후</u> 가입 진행되니 세무사등록증을 팩스 송부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보험 상품은 한국세무사회와의 보험업무협약에 따라 안내 및 제공되며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에서 가입 신청 및 손해사고 접수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보험 가입서비스'

https://www.locktonpi.com

전화: 02-2011-0300 / 02-6324-3852~6 팩스: 0503-8379-2008, 02-2011-0301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